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84,200,000	47,526,000
일반회계		1,325,200,000	39,756,000
특별회계		259,000,000	7,770,000
공기업특별회계		175,800,000	5,274,000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101,400,000	3,042,000
	상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74,400,000	2,232,000
기타특별회계		83,200,000	2,496,000
	주택사업특별회계	808,000	24,24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6,892,000	506,76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383,000	71,49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40,000	187,200
	치수사업특별회계	1,936,000	58,08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80,000	53,400
	청소사업특별회계	50,701,000	1,521,03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923,000	27,690
	수질개선특별회계	620,000	18,6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17,000	27,51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액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114,64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보수,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직무수행경비
3. 배상금, 국선번호료, 법정보상금
4. 지방채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재해대책비 및 복구경비
6. 반환금
7. 선거관련경비